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튼튼배당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위험 등급 변경(4등급>5등급) 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효 력 발 생 일	2024년 03월 22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	위험 등급 변경(4등급>5등급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4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5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추가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----	------	------	------

[요약정보]			
	위험 등급 변경(4 등급▷5등급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4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5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추가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4.03.22: 위험 등급 변경(4등급▷5등급) /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/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모펀드 환매조건부매수 추가, 오기 정정	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 ① ~ ⑨ (생략) ⑩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다. 1. ~ 2. (생략) 3. <신설>	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 ① ~ ⑨ (현행과 동일) ⑩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</u>

		<p>⑪ ~ ⑫ (생략)</p> 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(2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~ ⑩ (생략)</p> <p>⑪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신설></p> <p>⑫ (생략)</p> 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	<p>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⑪ ~ ⑫ (현행과 동일)</p> 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(2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~ ⑩ (현행과 동일)</p> <p>⑪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⑫ (현행과 동일)</p> 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(현행과 동일)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문구 추가, 위험등급 변경(4등급 > 5등급)	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	<p>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</p>

	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5.7064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<u>4등급(보통 위험)</u>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3.1.13</u>)</p>	<p>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4.0829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<u>5등급(낮은 위험)</u>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4.1.13</u>)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규약 문구 반영 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~ (4) (생략)</p> <p>(5) <신설></p> <p>(5) (생략)</p> <p>(6) (생략)</p> <p>(7) (생략)</p> <p>(8)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~ (4) (현행과 동일)</p> <p>(5) <u>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</u>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<u>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(6) (현행과 동일)</p> <p>(7) (현행과 동일)</p> <p>(8) (현행과 동일)</p> <p>(9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	가. (생략) 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☎ 02-2180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aitas.com</u> (2) (생략) 다. ~ 라. (생략)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fundpartners.com</u> (2) (현행과 동일) 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문구 추가	가. (생략) 나. 수시공시 (1) (생략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생략) (3) (생략)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수시공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1. ~ 7. (현행과 동일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현행과 동일) (3) (현행과 동일)

<끝>.